

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·접수 안내문

□ 신청절차

- 내국인 구인등록(워크넷 www.work.go.kr) 후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(fes.kbiz.or.kr)를 통해 신청서류 제출

구 분	워크넷 게재 기간
워크넷에만 내국인근로자 구인노력을 한 경우	최소 14일
워크넷 구인노력과 일간지(비록시장, 교차로 등) 구인노력이 3일 이상 병행된 경우	최소 7일

□ 신청서류 [서류양식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→ 자원사업 → 외국인력 고용지원 참조]

-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(필수 제출)
-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신청 등 업무대행계약서(필수 제출)
- 위임장(필수 제출)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서(필수 제출)
- 사업자등록증 사본(필수 제출)
- 사업장 사진(2가지 사진 필수 제출) * 사진 용량: 하나당 2.5MB 이하
 - ① 사업장 전경사진
 - ② 근무 장소에서 근무자들이 일하는 모습 사진
-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표
(기숙사 제공 시 필수 제출, 표 참고하여 추가 서류제출)

구 분	추가 서류제출
기숙사로 주택, 고시원, 오피스텔, 숙박시설(여관 등)을 제공할 경우	임대차 계약서 제출
기숙사로 가설건축물을 제공할 경우	가설건축물 신고필증(용도: 임시숙소) 제출
기숙사로 사업장 건물, 기타 주택형태 시설을 제공할 경우	건축물 대장(용도: 기숙사) 제출

* 가설건축물 신고필증 및 건축물 대장 발급처: 관할 행정복지센터

- 기숙사 사진(기숙사 제공 시 12가지 사진 필수 제출) * 사진 용량: 하나당 2.5MB 이하
 - ① 기숙사 전경사진
 - ② 침실 내부 사진
 - ③ 침실 잠금장치 사진
 - ④ 화장실 내부 사진
 - ⑤ 세면 및 목욕시설 내부 사진
 - ⑥ 화장실, 세면 및 목욕시설 잠금장치 사진
 - ⑦ 냉방시설 사진
 - ⑧ 난방시설 사진
 - ⑨ 소화기 사진
 - ⑩ 화재감지기 사진
 - ⑪ 수납공간 사진
 - ⑫ 채광 및 환기시설 사진

□ 대상국가 : 16개국 [캄보디아, 네팔, 인도네시아, 미얀마, 필리핀 등]

□ 배정방법 : 점수제

- 기본항목 : 고용 허용인원 대비 외국인 고용인원, 재고용 만료자 비율 등
- 가점항목 : 우수기숙사 설치·운영, 사업주 교육이수, 귀국비용·상해보험 완납, 위험성평가 인정 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(kosha 18001) 인증 사업장
- 감점항목 : 안전보건상 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재해 발생·노동관계법 위반 사업장,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사업장 변경자가 있는 사업장, 출국만기보험 체납, 기숙사 시설 기준 미달, 산재은폐 및 보고의무 위반 등

□ E-9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인원 [제조업] · 사업장별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폐지

내국인 피보험자 수	외국인 고용허용인원
1명 ~ 10명	내국인 피보험자 수 +5명 단, 최대 9명
11명 ~ 50명	내국인 피보험자 수 단, 최대 15명
51명 ~ 100명	17명 이하
101명 ~ 150명	20명 이하
151명 ~ 200명	25명 이하
201명 ~ 300명	30명 이하
301명 이상	40명 이하

*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내국인(3개월 평균)이 1인 이상 고용되어 있어야 함

□ E-9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인원 한도상향

조 건	구 분	상향 정도
50인 미만 사업장	50인 미만 사업장	· 고용허용인원 20% 상향
인력부족업종	(10) 식료품 제조업	· 고용허용인원 20% 상향
	(13) 섬유제품 제조업(의복제외)	
	(22)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	
	(25) 금속가공제품 제조업; 기계 및 가구 제외	
	(29)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	
	(32) 가구 제조업	
뿌리산업	(311) 선박 및 보트 건조업	· 고용허용인원 20% 상향
	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뿌리기업확인서를 발급한 사업장 *Tel) 041-589-8114	
특정 지역	○ 서울시특별시, 인천광역시, 경기도를 제외한 지역 ○ 경기도 내 인구 20만명 미만 시·군 지역 ○ 경기도 내 인구 20만명 이상이지만 인구 수 당 중소 제조업 사업체 수가 상위 10%인 시·군 ○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경기도 내 인구 20만명 이상인 시·군 지역 중 『소득세법 시행규칙』 제7조에 따라 벽지에 해당하는 지역	· 고용허용인원 20% 상향